##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3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서영석・김한규・문진석

민병덕 • 박희승 • 강준현

이건태 • 이정문 • 조승래

김기표 • 이해식 • 양부남

이연희 • 박홍배 • 이재관

서영교 · 김태년 · 서미화

오세희 • 박균택 • 정준호

민형배 · 위성곤 의원

(239])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원자력· 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제외한 발전사 업자의 경우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바, 해당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 등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유연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사업 우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 나.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 법률 제 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을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	제13조의2(발전사업자의 지역지		
<u>자의 지역지원사업)</u> ① <u>원자력</u>	원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u>발전소나 수력발전소</u> 를 운영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		
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생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			
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u>주변지역</u>		